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정	1980.11. 1.	규칙 제 24호
개정	2010. 3. 5.	규칙 제527호
	2011. 2.14.	규칙 제552호
	2012. 3.28.	규칙 제596호
	2013.10.25.	규칙 제635호
	2015. 4. 2.	규칙 제668호
	2015. 6.25.	규칙 제676호
	2015. 8.28.	규칙 제685호
	2016.11.11.	규정 제722호
	2018. 3.12.	규정 제751호
	2018. 9.13.	규정 제768호
	2018.12.17.	규정 제773호
	2020.11.23.	규정 제828호
	2021. 1.10.	규정 제834호
	2023. 5.15.	규정 제8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내 사무를 체계화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업무단위가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부속시설에 관련되는 사항은 가장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비중이 동일하거나 또는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의2(팀제 운영) ①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13조제2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5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8.12.17., 2020.11.23.>
② 총괄팀장은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팀장은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전산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로 보한다. 다만, 팀장의 경우 해당 직급에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차하위 직급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0.11.23.>

제4조(대학원)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원 설치·폐지
2.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3. 대학원 입학 업무
4.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5. 수업, 성적 및 시험
6.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7. 학술연구
8. 후생 및 장학

9.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18.3.12.]

제5조(교무처) ① 교무과장은 교무과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교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 인사관리
2. 교원 정원관리
3. 교원 복무관리
4. 교원 교육 및 연수
5. 교원 상훈 및 징계
6. 교원 제증명 발급
7. 학칙의 제정·개정 및 변경
8. 연구실 배정 및 관리
9. 교원 업적평가(교원성과급 포함)
10. 교무과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면
11. 그 밖의 교무행정에 필요한 사항

③ 수업·학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학부·학과 및 과정의 설치 폐지
2. 교과과정 편성, 개편 및 조정
3. 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4. 교수 책임시간 조정
5. 수업시간표 작성
6. 수강신청 및 수업관리(E-러닝 포함)
7. 실험·실습 기자재 업무
8. 교외 교육 지도
9. 보강계획 승인 및 관리
10. 교원의 강의평가
11. 학점교류
12. 집중수업 관리
13. 학점 및 성적관리
14. 학적 통계
15. 각종 시험 관리
16. 타 전공 신청 및 승인
17. 학적변동관리(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등록)
18. 학사징계
19.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
20. 학위수여
21. 교직과정운영
22. 교원자격증 발급
23. 학적부 관리
24. 학적(력) 조회

25. 강사채용 및 관리
26. 강사 및 학생 제증명 발급
27. 강의실 배정 및 관리
28. 관인관리(제증명발급용)
29. 그 밖의 학사행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11.23.]

제6조(기획처) ① 기획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2.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주·월간업무포함)
3. 대학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4. 공간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6. 대학요람 발간에 관한 사항
7.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8. 정부재정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평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구조개혁, 대학외부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학과평가, 행정부서 평가, 부속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 인증제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교육통계 및 통계연보 발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기획평가총괄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기획처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20.11.23.]

제7조(훈련학생처) ① 훈련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대회 출전 관리(선수등록 및 실적관리)
2. 경기기술개발 및 정보수집
3. 학생훈련계획 수립 추진
4. 학생출전, 국가대표선수 관리
5. 훈련용 기구관리
6. 전문실기 종목의 연구개발
7. 전문실기 지도교수 및 시간강사 추천
8. 훈련 지도를 위한 연구 및 특별강연과 강습
9. 국내외 전지훈련 및 교환경기에 관한 사항
10.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면
11. 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12. 체육관 관리
13. 체육박물에 관한 자료수집·보관·전시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체육특기자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입시·학생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입시에 관한 업무
2. 학생 정원 관리
3. 장학생 선발
4. 수업료 감면자 선발
5. 학생 학자금 용자에 관한 사항
6. 학생병사 업무
7. 학생활동 상담지도 및 지원
8. 학생회 운영 지도
9. 학생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학생 해외 유학 추천
11. 학생증 발급
12. 학생 행사 및 집회에 관한 사항
13.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4. 학생 후생 복지시설 관리
15. 후생복지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보 발행 및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17. 각종 간행물에 대한 지도감독
18. 그 밖의 입시 및 학생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3.5.15>

[전문개정 2020.11.23.]

제8조(사무국) ① 총무과장은 총무과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리
2. 보안 업무
3. 직원 정원·인사 및 교육훈련
4. 직원 성과평가, 상벌, 복무관리
5. 문서의 접수·배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6. 규정 정비 및 관리
7. 감사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9.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0.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연금, 4대보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각종 행사(교무, 학생행사 제외)
13. 청사관리 및 조경 관리
14. 시설 사용 승인(대회의실, 대강당)
15. 공용차량 및 주차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사회복지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에 관한 사항

18.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타과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③ 재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3. 회계직 공무원 임면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급여에 관한 사항
 5. 등록금 징수 결정 및 수납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 ④ 건축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종합계획 수립
 2. 시설사업 심사분석
 3. 공사계획,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공사 준공 검사
 5. 시설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건축협의
 7. 관급자재관리 및 수불부 정리
 8. 공사대장 정리
 9. 하자보수대장 정리
 10. 설계도면 관리
 11. 영선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⑤ 기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2. 기계 및 위생난방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13. 보일러가스, 위험물취급자 선·해임사항
 14.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16. 소방 훈련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⑥ 전기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7.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사항
 18. 전기, 통신시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9.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⑦ 시설총괄팀장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20.11.23.]

제9조(학술정보원) 학술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13.>

1. 기획 홍보 및 학술교류
2. 자료구입 및 기증
3. 자료 조직
4. 자료운영관리
5. 이용자서비스
6. 정보시스템 운영

7. 도서관 시설 운영
8. 정보화 기획
9. 서버관리 및 운영
10.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1.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12.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4. 컴퓨터 관련 수업 지원
15.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관리

제10조(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양,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성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체육지도자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외부위탁연수에 관한 사항

제11조(생활관) 생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관 및 학생식당 관리
2. 생활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급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관 입·퇴사 관리 <신설 2018.3.12.>
5. 생활관 학생복지 및 후생시설 관리
6. 그 밖의 생활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학생 취업·창업·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0.11.23.>
2. 취업·창업 촉진을 위한 대내·외 활동 및 사업 추진
3. 재학생 취업·창업 추천, 상담 및 정보 제공 <개정 2020.11.23.>
4.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설명회, 캠프, 박람회 등 추진
5. 취업통계 조사 분석 및 DB 구축
6. 취업경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7. 현장실습 및 국내·외 인턴십과정 운영
8. 개인상담(심리, 진로 등) 프로그램 운영
9.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10. 집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강 등) 운영
11. 운동중단학생 프로그램 운영
12. 학생생활 지도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13.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3.>
14. 그 밖의 취·창업 및 상담 지원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법 및 학습법 향상에 관한 사항
2. 교육매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매체제작실 관리 및 운영
4. 이러닝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진료 및 처치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교직원의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3.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상담에 관한 사항
4. 단체훈련 및 대회출전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본교(시설물)의 방역에 관한 사항
6. 먹는 물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7. 학생보험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8.3.12.>
9. 삭제 <2018.3.12.>

제15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3.12.>

1. 장애학생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보조인력 등 인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물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사항

제16조(산학협력본부) 산학협력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 및 조정
2. 산학연협력 협약 체결 및 이행
3. 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학학술연구진흥 등에 관한 종합계획·심사분석
5.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창업·취업 지원
6.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연구년제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대외협력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대학 홍보에 관한 사항
11. 대학 명칭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숙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산학연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11.23.]

제17조(체육과학연구소) 체육과학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력 향상에 관한 과학적 연구
2. 신체활동에 관한 화학적 연구
3.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4. 연구논문집 발간 및 보급
5. 기관 및 단체의 수탁 사업
6. 체육과학연구소 소속 실험실 관리 운영
7. 그 밖에 체육과학연구소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스포츠정보원) 스포츠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체육, 스포츠 변화 양상 분석 및 결과 보고
 2. 국가, 지역사회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유지
 3. 정부부처 사업과 연계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설계 및 자원 마련
- [본조신설 2020.11.23.]

제19조(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2. 산학협력단 회계에 관한 사항
 3. 교외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연구비(간접비 포함) 관리
 4.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5.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6. 가족회사 및 학교기업 관련 업무
 7.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채용·평가·복무 등) 업무
 8. 산학협력단 직원(연구원 포함) 보수 지급 및 4대 보험관리
 9. 그 밖에 산학협력단 업무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20.11.23.]

부 칙(제24호, 1980.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전 처리된 업무는 이규정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55호, 1985.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2호, 1990. 9.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9호, 1995. 10. 11.)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5호, 1997. 4. 18.)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9호, 1997. 5. 8.)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7호, 1999. 3. 23.)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45호, 2001. 9. 1.)

이 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7호, 2003. 10.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7. 1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72호, 2006. 4.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27호, 2010. 3.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52호, 2011.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96호, 2012. 3.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5호, 2013. 10.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68호, 2015.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76호, 2015. 6.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85호, 2015. 8.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22호, 2016. 11.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51호, 2018. 3.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68호, 2018. 9.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3호, 2018. 12.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28호, 2020.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한국체육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② 한국체육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한국체육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④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⑤ 한국체육대학교 명예교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⑥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학처장”을 각각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⑦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⑧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학처장”을 각각 “교무처장”으로 한다.

⑨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⑩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⑪ 한국체육대학교 조교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훈련처장”을 각각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⑫ 한국체육대학교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⑬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학과”를 “교무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중 “교학처장”을 각각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85조 중 “교학과”를 “교무과”로 한다.
제86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⑭ 한국체육대학교 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⑮ 한국체육대학교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⑯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속연구소의 장”을 “연구협력시설의 장”으로 한다.
- ⑰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학과(교무팀)”를 “교무과(교무팀)”로, “교학과(입시학생팀)”를 “훈련학생
총괄팀 (입시학생팀)”로 한다.
- ⑱ 한국체육대학교 자체 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종합인력 개발센터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산학협력단장”을 “산학협력본부장”
으로 한다.
- ⑲ 한국체육대학교 기획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 ⑳ 한국체육대학교 시설공간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훈련처”를 “훈련학생처”로 한다.
- ㉑ 자랑스러운 한국체대인 상 수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대의협력단장”을 “산학협력본부장”으로 한다.
- ㉒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평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㉓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특기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훈련처”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 ㉔ 한국체육대학교 훈련장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교학처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 ㉕ 한국체육대학교 장학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학처”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훈련처장”은 “학과장”으로 “훈련처”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학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훈련처장”은 “학과장”으로 “훈련처장”을 “스포츠과학대학장”으로 한다.
- ㉖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교학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학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학처”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학생과”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교학처”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31조 중 “교학처”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 ㉗ 한국체육대학교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 ㉘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훈련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훈련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훈련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교학처” 를 “교무처” 로 “훈련처” 를 “훈련학생처”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학처” 를 “교무처” 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훈련처” 를 “훈련학생처” 로 한다.

㉔ 한국체육대학교 캠퍼스 주차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시설과장” 을 “시설총괄팀장”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한다.

㉕ 한국체육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훈련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훈련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부속 연구소의 장” 을 “연구협력시설의 장” 으로 한다.

㉖ 한국체육대학교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속연구소” 를 “연구협력시설”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학과장” 을 “교무과장” 으로, “기획과장” 을 “기획평가총괄팀장” 으로, “훈련과장” 을 “훈련학생총괄팀장” 으로, “시설과장” 을 “시설총괄팀장” 으로 한다.

㉗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정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한다.

㉘ 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하고, “훈련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대외협력단장” 을 “산학협력본부” 로 한다.

별표 2 중 “교학처” 를 “교무처” 로 한다.

㉙ 한국체육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종합인력개발원” 을 “인재개발원” 으로 한다.

제1조 중 “종합인력개발원” 을 “인재개발원” 으로 한다.

제2조 중 “종합인력개발원” 을 “인재개발원”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한다.

㉚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조 중 “종합인력개발원” 을 “인재개발원”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종합인력개발원장” 을 “인재개발원장”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하고, “훈련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㉛ 한국체육대학교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훈련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㉜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년제교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산학협력단장” 을 “산학협력본부장”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산학협력단장” 을 “산학협력본부장” 으로,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를 “산학협력본부운영위원회” 로 한다.

- 제3조제4항제3호 중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를 “산학협력본부운영위원회” 로 한다.
- 제12조 중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를 “산학협력본부운영위원회” 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한다.
- ㉔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산학협력단장” 을 “산학협력본부장” 으로,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중 “산학협력단” 을 “산학협력본부” 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산학협력단” 을 “산학협력본부” 로 한다.
- ㉕ 한국체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중 “산학협력단” 을 “산학협력본부” 로 한다.
- ㉖ 한국체육대학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대외협력단” 을 “산학협력본부” 로 한다.
- 제4조 중 “대외협력단장” 을 “산학협력본부장” 으로,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훈련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 ㉗ 한국체육대학교 외국인숙소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대외협력단” 을 “산학협력본부” 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대외협력단” 을 “산학협력본부” 로 한다.
- 제3조제2항제2호 중 “훈련처” 를 “훈련학생처” 로 한다.
- 제5조제2항제1호 중 “훈련처” 를 “훈련학생처” 로 한다.
- 제5조제3항 중 “대외협력단장” 을 “산학협력본부장” 으로 한다.
- 제6조 중 “대외협력단운영위원회” 를 “산학협력본부운영위원회” 로 한다.
- ㉘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훈련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 ㉙ 한국체육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과장” 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2호 중 “교학처장” 을 “교무과장” 으로 “교학처” 를 “교무처” 로 한다.
- 제4조제2항제3호 중 “훈련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훈련처” 를 “훈련학생처” 로 한다.
- 제16조제1항 중 “교학과장” 을 “교무과장” 으로, “기획과장” 을 “기획평가총괄팀장” 으로, “훈련과장” 을 “훈련학생총괄팀장” 으로 한다.
- 별표 1 중 “교학처장” 을 “교무과장” 으로 한다.
- 별표 5 중 “교학처” 을 “교무처” 로 한다.
- ㉚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부속연구소” 를 “연구협력시설” 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훈련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 ㉛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제18조” 를 “제18조의2” 로, “부속연구소” 를 “연구협력시설” 로 한다.
- ㉜ 한국체육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한다.

부 칙(제834호, 2021. 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89호, 2023.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체육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훈련학생처 결재권자 중 “총괄팀장” 을 삭제한다.

[별표] <신설 2020.11.23. 2021.2.10., 2023.5.15.>

부서별 팀제 운영
(제3조의2제1항 관련)

대학원, 처·국, 부속시설, 연구협력시설	부서명	팀장명
대학원	-	대학원팀장
교무처	교무과	교무팀장, 수업·학적팀장
기획처	-	기획평가총괄팀장, 기획팀장, 평가팀장
훈련학생처	-	훈련팀장, 입시·학생팀장
사무국	총무과	총무팀장, 재무팀장
	-	시설총괄팀장 건축팀장, 기계팀장, 전기팀장
학술정보원	-	정보관리팀장, 정보봉사팀장, 정보보안팀장, 인프라운영팀장, 학사정보화팀장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팀장
생활관	-	생활팀장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팀장
보건진료소	-	물리치료팀장
산학협력본부	-	대외협력팀장, 산학지원팀장